#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 안 번 호 제3293호

제출년월일 2023. 9. 4. 제 출 자 김 포 시 장

## 1. 심사경과

○ 본 안건은 9월 4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#### 2. 제안이유

○ 유실·유기동물 및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구조와 적정 보호· 관리를 통한 동물학대 예방과 동물복지 시설 확충으로 반려동물의 양육부담 완화 등 동물복지 실현 및 인식 개선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, 간사 정비(안 제8조~제10조)
  - 위원회 규정 방식에 맞추어 정비
- 나. 소유자 등의 의무(안 제11조)
  -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소유자 등의 의무 신설
- 다. 동물의 구조・보호 등(안 제14조)
  - 「동물보호법」 개정에 따른 "사육포기 동물의 인수" 등 사항 추가
- 라. 반려동물 보건소 및 놀이터 설치 · 운영 추가(안 제16조, 제17조)
  - 동물 복지시설 및 운동·휴식시설 설치·운영
- 마. 대규모 개발사업 구역 내 동물보호(안 제19조)
  -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, 이주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정비

# 4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상위법인 「동물보호법」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유실· 유기동물 및 반려동물 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유자의 의무를 신설하며, 반려동물 보건소·놀이터 등 동물 복지시설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안으로,
-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